

의안번호	제 371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8월 일 (제313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2년 8월 2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1
----------	-----

제출연월일 : 2012년 8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결정에 따라 통합시 출범에 수반되는 사무를 총괄하고 처리할 통합추진지원단 설치
- 진천군·음성군 내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전담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추진지원단” 설치하고 소관사무 명시 : (안 제13조의2)
- “혁신도시관리본부” 설치하고 소관사무 명시 : (안 제13조의3)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바이오밸리추진단 및 소방본부”를 “바이오밸리추진단, 통합추진지원단,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로 한다.

제13조 다음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통합추진지원단) 통합추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소재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마련
2. 통합시 비전 및 지역발전방안 마련
3. 하부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방안 수립
4.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5. 통합시 교육발전방안 마련
6. 기타 통합시 출범에 필요한 사항 수행

제13조의2 다음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혁신도시관리본부)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2. 자치단체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운영지원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통합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관광환경국, 균형건설국, <u>바이오밸리추진단 및 소방본부</u>를 둔다.</p> <p><신설></p> <p><신설></p>	<p>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관광환경국, 균형건설국, <u>바이오밸리추진단, 통합추진지원단,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u>를 둔다.</p> <p>제13조의2(통합추진지원단) 통합추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사 소재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마련 2. 통합시 비전 및 지역발전방안 마련 3. 하부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방안 수립 4.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5. 통합시 교육발전방안 마련 6. 기타 통합시 출범에 필요한 사항 <p>제13조의3(혁신도시관리본부)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2. 자치단체간 업무조정예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운영지원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 필요한 사항

관련법령 발췌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①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통합대상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